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음부즈만 위촉 동의안】

의안 번호	395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  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6. / 남양주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음부즈만을 위촉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남양주시 음부즈만 위촉 동의  
- 동의대상 : 5명 (변호사1, 기술사1, 건축사1, 前 공무원2)

연번	성명	거주지	주요경력	지원자격
1	김운의 (71년생, 52세)	남양주시 다산동	○ 현)법무법인 다운 소속 변호사 ○ 전)법무법인 대아 소속 변호사	변호사
2	정기철 (53년생, 70세)	남양주시 화도읍	○ 현)케이에스엠기술 부사장 ○ 전)서울특별시 공무원(사무관)	기술사 (토목)
3	조성혁 (70년생, 53세)	남양주시 호평동	○ 현)풍양SD 건축사사무소 대표 ○ 전)성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	건축사
4	지인수 (63년생, 60세)	경기도 고양시	○ 전)헌법재판소 공무원(법원부이사관)	前공무원
5	황진연 (57년생, 66세)	서울시 강남구	○ 전)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○ 전)감사원 공무원(감사관)	前공무원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동의안은 「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한 후보자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

- 없 음

### 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부.